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별내선(8호선연장)2공구 건설공사 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10 월 18 일

회 사 명 : 두산건설(주)

대 표 자 : 이 병 화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